

학 사 운 영 규 칙

2007.3.

1차 개정 2009.9.

2차 개정 2012.4.

3차 개정 2014.4.

4차 개정 2016.3.

1. 조 직

1.1 학과교수회의

- ① 학과교수회의는 학과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의결하며, 학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14.3.18)
- ② 학과교수회의는 학과장 혹은 소속교수 1/4인 이상의 요구로 개최되며, 회의 안건은 회의 이전에 소속교수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14.4.)
- ③ 학과교수회의는 다음의 사항들을 소속교수 2/3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4.4.)
 - 학사위원회 규칙 개정
 - 학과장선출
 - 기타 중요 사항
- ④ 학과교수회의 내용은 학과장이 기록하여 보관한다.

1.2 학과장

- ① 학과장은 학과를 대표한다.
- ② 학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학과장은 임기동안 전공 관련 이외의 보직은 수행하지 않는다.

1.3 학사운영위원회

- ① 학사운영위원회는 학과의 학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하고 검토하여 결정하거나 학과교수회의의 안건으로 올린다.
- ②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학과발전계획
 - 학과교과과정의 개편
 - 학생의 전공능력평가 및 학점사정

- 기타 학과교수회의 및 학과장이 제안한 사항
-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학과장을 포함하여 소속교수 4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4.)

2. 학사운영

2.1 교과과정

2.1.1 교과과정 적용

교과과정 적용은 충남대학교 학칙에 의해 입학년도를 기준하여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학사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건축설계 교과목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2.1.2 선수과목

- ① 전공과목의 운영과 이수는 단계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과목은 선수과목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2.2 설계과목의 운영

2.2.1 분반 기준

- ① 주당 10시수인 건축설계 과목의 분반은 학생 일인당 1주일에 40분 이상의 개인지도가 가능하도록 정원을 구성한다.
- ② 분반별 수강인원은 ①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20%이내에서 수강인원을 증가할 수 있다.
 - 추가 합격에 의한 수강인원 증가
 - 학기 1/3 이전 복학생에 의한 수강인원 증가
 - 기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

2.2.2 외래교수

- ① 외래교수는 담당교수의 제의에 의하여 학과교수회의에서 추천한다.
- ② 외래교수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국내외 건축사 자격 소지자
- ③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실무경력과 작품성이 인정되어 학과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승인 된 자

2.2.3 정기 학기

- ① 건축설계과목은 선수과목제로 운영되며, 건축설계1부터 10까지 10개 과목을 학년·학기 순서대로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4.4.)

- ② 건축설계과목 수강은 한 학기당 1개로 제한한다.
- ③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 학사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2.2.4 계절 학기

- ① 계절 학기 설강은 학사운영과 학생들의 필요에 의하여 설강할 수 있다.
- ② 계절학기 신청학생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 전과 및 편입생 : 5학년과정을 제외한 1~4학년과정 설계과목
 - 복학생 : 교육과정변경으로 해당 과목이수가 졸업기준 정기학기(10학기)내에 불가능한 경우

2.3 성적 평가

- ① 모든 전공과목 성적평가는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6조에 따라 상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4.4.)

<표 1. 상대평가 성적등급별 분포비율>

등급	A등급	B등급 이상 (A등급+B등급)	C등급 이하
구성비	30%이하	70%이하	30% 이상

- ② 다만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6조 ②항 2호에 의거한 상대평가 미 적용대상과목(이론강의를 병행하지 않는 실험(실습·실기)과목과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중 건축설계9와 10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상대평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4.4.)
- ③ ②항에 기술한 충남대학교 상대평가 미 적용대상과목 중에서 학사운영위원회가 필요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

2.4 편입·전과

2.4.1 편입·전과생 모집과 관리

- ① 충남대학교 교무규정에 의거하여 신입생을 선발한다.
- ② 지원자의 평가 및 합격자 학사관리는 학사운영위원회의 개인별 심사에 따른다.

2.4.2 편입·전과생 학점인정 기준

- ① 편입·전과생의 학년 및 교양과목 이수학점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칙 및 교무규정이 정하는 바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편입·전과생의 전공과목 이수학점 인정은 <별첨 1. 건축학인증프로그램에 따른 편입·전과생의 학점인정 기준>에 의거하며, 특별한 경우에 학사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

2.5 팀 배정

2.5.1 구성

- ① 건축설계 8(4-2)까지 수료한 학생(휴학예정자 포함)은 각각 전임교수의 팀에 소속된다. 다만, 파견·연구년 등으로 인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교수의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16. 3.)
- ② 팀은 지도교수 이하 대학원생, 학부생으로 구성되며, 그 소속은 5학년 설계 과목 분반의 기준이 된다.

2.5.2 지원 자격

건축설계8(4-2)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4.)

2.5.3 팀 정원

팀 정원은 건축설계8 이상을 수료한 학생의 지원을 통하여 전임교수별로 나누어 배정한다. (개정 2016. 4.)

2.6 기 타

2.6.1 강의계획서 및 강의파일

- ① 전공과목 담당교수는 개강 2주전까지 <별첨 2. 강의계획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4.3.18)
- ② 전공과목 담당교수는 교수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다.
- ③ 강의파일은 성적입력 종료 후 2주안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공교수회의의 확인 후 보관한다.

3. 졸업자격 및 졸업논문

3.1 졸업자격 (개정 2014.4.)

- ① 충남대학교 학칙에 의거한 교육과정과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이 정한 졸업이수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통과한 자에게 '건축학사' 자격을 부여한다.

3.2 졸업논문 (개정 2014.4.)

- ① 충남대학교 학칙 제68조(졸업 논문 규정)에 의하여, 졸업이수학점을 마친 학생은 졸업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 ② 건축학과의 졸업논문은 5학년 설계과목(이하 건축설계9,10)의 운영에 의한 논문과 작품포트폴리오로 대체한다.
- ③ 건축설계9는 건축설계10의 선수과목으로서 공통된 주제로 연결 이수되어야 졸업논문 심사대상으로 인정한다.
- ④ 건축학과의 졸업논문의 과정과 결과물은 <별첨 3. 건축학과 졸업논문기준>에 따른다.

<별첨 1>

건축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편입전과생 학점인정 기준

1. 학사운영위원회

- 1) 목적 : 국제인증기준에 부합된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학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편입생 개개인의 학점사정을 통해 원활한 교육과 적합한 수업 진행을 도모한다.
- 2) 구성 : 건축학과장을 포함한 전임교원(3인 이상)들로 구성한다.

2. 학점사정원칙

- 편입학 및 전과 학생은 충남대학교 학칙에 의거, 배정된 교과과정 적용년도 및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 전공 교과목의 학점인정

가) 인정교과목 점수 하한

- 전적 대학 교과목의 점수가 C미만의 경우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동일 교과목 인정

- 전적대학 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리포트 등을 제출받아 본 대학 학과의 해당교육과정과 교과목 내용이 일치하는 과목만을 인정하며 필요에 의해 전적대학의 내용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교과목 학점 인정

- 전적 대학 교과목 학점이 본 전공 교과목 학점에 미달일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이 불가하다.
- 단, 전적 대학의 연계과목이 인정되는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연계 과목 학점과 합산하여 본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점인정표는 편입 및 전과의 <별첨1-1> 및 <별첨1-2>와 같다.

전적 대학	충남대학교 건축학과(5)	
건축구조(2학점)	→ 건축구조학(3학점)	불가
건축구조1(2학점) 건축구조2(2학점)	→ 건축구조학(3학점)	인정

2) 설계 교과목 학점인정

- 전적대학 건축 관련 전공자에 해당하며, 전적대학 설계교과목 학점 범위에서 본 학과의 학기 순에 따른 단계별 이수원칙으로 인정한다.

가) 1학년 설계과목

- 전적대학 설계 교과목의 학점을 합산하여 본 학과의 설계교과목의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전적 대학	충남대학교 건축학과(5)	
기초설계1(3학점) 기초설계2(3학점)	→ 건축설계1(6학점)	인정
기초설계1(3학점) 기초설계2(3학점) 건축설계1(5학점)	→ 건축설계1(6학점) 건축설계2(6학점)	인정

나) 2학년 이상 설계교과목

- 전적대학 5년제 건축학 전공자로 제한하며, 1학년 설계교과목의 학점인정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다) 포트폴리오 평가에 의한 인정

- 대상자는 학점인정 사정시,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위원회는 이를 평가하여 설계교과목 학점인정에 반영 할 수 있다.
- 포트폴리오로 인정받은 학점은 전적대학 설계과목 학점에 가산되며 본 학과 설계과목 학점사정 범위에 포함한다.

전적 대학	충남대학교 건축학과(5)	
기초설계1(3학점)	→ 건축설계1(6학점)	불가
기초설계1(3학점) 포트폴리오(3학점)	→ 건축설계1(6학점)	인정

담당	학점사정위원회			200 학년도 학기				학 과 장	
				편 입 학 점 인 정 표				성명 : ①	
수험번호								성 명	
전적 대학			대학교		학과(학부)		전공		
	이수학점 (설계교과목)		()		편입(예정)일자		200 . . .		
학점사정내역(계) : 총 (/68) 학점 인정									
교양	/42		전필	/29		전선	일선 (영어)		
Portfolio	유() 무()		()학점 인정		심사소견				
설계교과목 인정 내역									
전적대학 이수과목					편입 인정과목				
구분	교과목명	학점	성적	구분	교과목 번호	학년 /학기	교 과 목 명	학점	
상기와 같이 인정교과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0 . . .									
편입학자					(인)				

200 학년도 학기

담당	신입학과장 (부학장)	학 장

전 과 학 점 인 정 표

학 과 장	
성명 :	인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대학교	학과(학부) 전공
편입 전 이수학점	공과 대학	건축학과 학년
		편입(예정)일자 200 . . .

학점사정내역(계) : 총 () 학점 인정

교양	전필	전선	일선
설계과목	학점사정 결과 및 소견		
Portfolio			

전 과 전 이수학점				전 과 후 인정학점					
구분	교과목명	학점	성적	구분	교과목 번호	학년/ 학기	교 과 목 명	학점	성적

강 의 계 획 서

1. 교과목 및 담당교수

■ 교과목정보

교과목명	국 문		개설연도 및 학기	
	영 문		대상학년	
	교과목번호		이수구분	
학점/시수(이론-실습)			분반번호	
강의시간(강의실)			선수과목	

■ 담당교수정보

성 명		연구실	
소 속		상담가능시간	
e-mail		Tel	
home page		C.P	

2. 수업목표

3. 수업진행 형태

4. 학습평가방법

5. 교재 및 참고문헌

구분	저자/역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 도	비고
교 재					
참고문헌					

6. 학생수행평가기준(SPC)

7. 주별강의내용 및 학습내용

주	강의주제	강의내용	과제	SPC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8. 기 타

건축학과 졸업논문 기준

1. 졸업논문 개요

- ① 충남대학교 학칙 제68조의 졸업논문은 건축학과 학생의 경우 건축설계 9, 10 에서 진행되는 졸업 설계 작품과 전시로 대체한다.
- ② 건축설계 9와 10은 다른 년도에 수강할 수는 있으나, 건축설계 9는 건축설계 10의 선수과목이다.

2. 졸업논문 진행과정

- 수업을 통하여 논문과 작품 주제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건축설계 9 (1학기)	졸업설계 제안(Thesis Proposal) 졸업설계 프로그램 제안 (Thesis Program) 디자인 발전(Design Development) 졸업설계 자격심사 (Qualifying Review)
건축설계10 (2학기)	졸업설계 논문작성 실시설계 도면작성 졸업설계 최종심사/전시회(Final Review / Exhibition) 졸업설계 포트폴리오 제출 (Thesis Project Portfolio)

3. 졸업논문 제출

- ① 학생들은 모든 심사위원들과 학과에 졸업 설계 논문을 1부씩 제출한다.
- ② 모든 논문은 A4 size 로 제출한다.
- ③ 학과에서는 졸업생들의 졸업설계 포트폴리오를 보관한다.

4. 졸업논문 심사

1) 심사위원 구성

- ①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지도교수는 건축설계 9, 10의 담당교수이다.
- ③ 심사위원의 자격
 - 본 대학의 교수
 - 국내외 건축사자격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한자

2) 졸업 심사위원의 의무와 권한

- ① 심사위원은 성적 평가표를 작성한다.
- ② 심사위원은 각 학생의 졸업 논문 및 설계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명시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 전원이 자격 불충분으로 '재심' 판정을 내릴 경우, 해당 학생은 최종심사 판정 후 20일 이내에 지적 사항에 관한 보완 작업을 마치고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2009.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